

성심종합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1동 243-7 우)143-200 전화) 452-3200, 446-0010 팩스) 02-457-5659

2018. 6. 5.

발신 :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강수림

수신 : 대한요트협회 회장 유준상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1. 질의

본인은 2009년부터 대한롤러경기연맹 14대, 15대 회장을 연임하다가 2016. 8. 28. 임기를 마쳤습니다.

본인은 단체의 임원을 맡지 않고 있다가 2018. 5. 17.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회장 인준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해석이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지 않고 출마하였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2. 답변

- ①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임기) 제2항은 연임회수 제한의 예외가 되는 경우에만 거치는 절차입니다.

위 규정은 예컨대 1회 연임(8년)을 하고 연속하여 출마를 하는 경우
우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정 받으라는 조항입니다.

- ② 귀하는 1회 연임을 하고 2년 이상 쉰 후에 다시 대한요트협회 보
궐선거에 출마(연속적으로 출마한 것이 아님)하여 당선된 것으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받을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
로 인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18. 6. 5.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강수림

